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37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전종덕·박수현·김 윤

송옥주 · 서미화 · 임미애

용혜인 • 한창민 • 김종민

장종태 · 소병훈 · 김준형

정혜경 • 윤종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 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1970년 230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3년 151만ha로 감소했고,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가 농촌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 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 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보존되고 소중히 이용·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식량·농지·수리"를 "식량·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농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농지관리청을 둔다.
- ⑧ 농지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u>식량·농지·수리</u> , 식품산업진	<u> 식량·수리</u>
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u>.</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농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관리청을 둔다.
<u><신 설></u>	⑧ 농지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
	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u>로 보한다.</u>